('06.10, '지역간 명칭분쟁 해결시스템 구축방안,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지역간 명칭분쟁 해결시스템 구축방안

대통령님의 지시('05.11.15, 국정상황실회의)에 의거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가 마련한 '지역간 명칭분쟁 해결시스템 구축방안'을 보고 드립니다.

< 요 약 >

1. 국책사업 등으로 인한 공공시설 등의 **명칭분쟁**이 지역간 **갈등**으로 대두됨에 따라 현 **시스템의 문제점**을 **보강할 개선방안**을 모색

※ 부산신항(분쟁기간 9년), 천안아산역(4년) 등

2. 현재, 국가사무 및 지명(측량법)에 대한 중앙-지방 정부간 분쟁 조정기구는 명시된 것이 없음

- 총리실 산하 **행정협의조정위원회**(지방자치법 제156조의 2)가 유사기구이나, 주로 **국가가 지방에 위임한 사무**에 한정하여 조정

※ 신항과 천안아산역 명칭분쟁도 국가사무로 인식되어 각하됨

3. 국회 계류 중인 **'공공기관갈등관리에관한법률'**에도 **강제조정권**이 없어 분쟁시 **해결방안이 미흡**

4. **사전갈등관리**를 위해 **'공공기관의갈등관리에관한법률'**를 조속입법하고, **갈등 사후조정**을 위해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조정범위에 **국가사무** 포함 및 **'중앙지명위원회'**(측량법)에 정부간 **지명분쟁조정권** 부여

* 행정협의조정위원회는 성격상 **'중앙·지방간 분쟁조정위원회'**로 개칭하고, '공공기관갈등관리에관한법률'에 강제조정권 부여는 장기검토

※ 본 방안은 국무조정실, 행자부, 지속가능위, 건교부와 합의된 사항

지역간 명칭분쟁 해결 시스템 구축 방안

대통령님의 지시('05. 11. 15, 국정 상황실회의)에 의거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가 마련한 '지역간 명칭분쟁 해결시스템 구축방안'을 보고 드립니다.

2006. 10.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 목 차 >

1. 추진 배경 ····· 1

2. 추진 경위 ····· 1

3. 현황 및 문제점 ····· 3

4. 개선 방안 ····· 5

5. 향후 계획 ····· 8

6. 관계부처 의견 ····· 8

별첨 1. 국내 명칭 분쟁 사례 ····· 9

별첨 2. 분쟁관련 조정기구 현황 ····· 13

별첨 3. 외국사례 분석 ····· 15

별첨 4. 관계기관 의견 및 반영 ····· 16

('06. 10,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지역간 명칭분쟁 해결 시스템 구축 방안

대통령님의 지시('05. 11. 15, 국정 상황실회의)에 의거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가 마련한 '지역간 명칭분쟁 해결시스템 구축방안'을 보고드립니다.

1. 추진 배경

□ 정부 정책 추진 과정 중 **새로운 명칭 부여 상황이 빈번하게 나타나면서 지역간 갈등의 원인**으로 작용

※ 국책 사업 : 부산신항, 천안 아산역, 평택 당진항 등

※ 지방 사업 : 전남도청 이전 신도시명(전남-무안), 제2현수교 명칭(하동-남해) 등

□ 행정협의조정위원회 등 현행 시스템으로 갈등 조정 중이나, 각 시스템이 지닌 **한계로 인하여 해결이 지연되는 경우 빈번**

※ 부산 신항 및 천안 아산역 명칭 분쟁: 행정협의조정위원회 각하 결정 등

2. 추진 경위

□ **정부혁신위 주관**으로 총리실·행자부·지속위 등과 협의하여 **방안을 마련**토록 **대통령 지시**(국정상황실, '05.11.15)

□ 정부혁신위 제10차('05.12.22)·제13차('06.01.09)·제17차('06.06.02) **지방분권 TF 협의회**에서 '**명칭분쟁 해결시스템 구축방안**' 논의

o TF 구성(김순은 위원 외 4인, '05.12.22) 후 7회 회의 개최

□ **신항**(부산,'06.4.17) 및 **천안아산역 명칭**('06.4.12) **분쟁**지역 **현지 조사**

□ 총리실 · 행자부 · 지속위 · 건교부 등 **관계기관** 회의('06.5)

o '**행정협의조정위원회**'(지방자치법)를 보강하여 **명칭분쟁해결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에 합의('06.5.19)

o **명칭 분쟁이외 중앙-지방 분쟁 사무**도 고려한 시스템 구축에 합의('06.5.26)

□ **관계기관** 최종 의견 수렴('06.6.5～'06.6.14)

o '공공기관의갈등관리에관한법'에 따른 **용어수정**과 **갈등조정회의**의 **강제조정권 부여**를 **대안**에서 **삭제**할 것을 요청(국조실, '06.6.8)

☞ **용어 수정**은 반영, 일부 대안이 생략될 경우 **최적안 도출의 근거**가 **불분명**해지므로 **강제조정권 부여**는 **대안**으로 존치

o 타 법령에 의하여 **각 기관**에서 운영하는 **갈등 조정 시스템**에 의한 **조정**이 **우선함**을 명시토록 요청(건교부, '06.6.14) ☞ **반영**

3. 현황 및 문제점

□ **국내 사례 분석**(별첨1)

o **국책사업**에 대한 **지역간 기관 명칭 분쟁**은 **선호대상**(PIMFY)에 관한 **분쟁**으로서,

- **분쟁 당사자**간 **합의**가 어려워 **갈등의 장기화**를 유발하고, 결과적으로 국가적인 **통합저해**, **국가자원 낭비**를 **초래**

※ 신항(부산)의 경우 명칭 결정까지 약 9년이 소요('97～'05)되었고, 천안아산역은 약 4년 소요('00～'03)

o **이해 지자체** 모두의 **협조**가 **필요**한 **국책사업**에 관련된 분쟁은 국가사무이더라도 **중앙 정부**가 어느 **한쪽의 편**을 **들기 힘들어,**

- **중앙정부 권한행사**의 **지연**을 초래하였고, 이는 **갈등**의 **증폭**과 국가차원의 **명칭 결정 비용 상승**을 초래

※ 신항의 경우, 해수부는 '부산신항'은 사업명일 뿐이며 정식 '항만' 명칭은 사업 준공 이후 지자체와 '협의' 후 결정한다는 식으로 명칭결정을 지연

※ 천안아산역의 경우도 중앙정부의 의지 부족을 이해관계자는 원인으로 지적

o **민주성**에 입각한 **사전 예방 절차**의 **불충분**도 **갈등 원인**으로 **작용**

※ 신항의 이해당사자들도 분쟁 해결 이전에 추진된 사업을 문제로 지적

□ **외국 사례 분석(별첨3)**

o 대부분의 **선진국의 경우, 공공시설**에 대한 **명칭 결정은 중앙정부**의 **적극적 개입을 수반**

- **미국** : 지명 분쟁 해결 위한 **지명위원회**(내무부, 국무부 등 참여)와 공공시설 명칭 분쟁 해결 위한 州(주)**단위 위원회** 운영

- **덴마크** : **문화부** 산하 **지명위원회** 운영

- **스페인** : **헌법**(제149조)에 의해 **주요 공공기관·시설물에 대한 명칭결정** 등을 **중앙정부 독점권한**으로 인정

- **헝가리 : 자치정부**간 **명칭 분쟁**시 **중앙정부**가 **개입·해결** 유도

o **명칭 분쟁**을 **지방간 자체해결**에 **의존**시, 갈등으로 **정책 추진 무산 사례**도 발생(ex : 일본)

※ 아이치현 미하마쵸와 미나미치다쵸의 합병으로 건설될 신도시의 명칭 관련 분쟁으로 합병자체가 무산('05.3.3)

□ 현행 및 도입 예정인 분쟁조정기구의 문제점(별첨2)

o **공공시설 명칭분쟁**은 **법령상 행정협의조정위원회**(지방자치법)와 **갈등조정회의**(공공기관의갈등관리에관한법, 예정)가 **담당 가능**하나,

- **행정협의조정위**는 **국가사무**라는 이유로 **명칭분쟁**을 **대상사무**에서 **제외**하여왔고, **갈등조정회의**는 **조정 강제 권한**이 없어, **제도적 보완**이 필요

※ 신항(부산)과 천안아산역 명칭분쟁은 행정협의위에 조정신청 되었으나, 국가사무라는 이유로 각하

o **지명위원회**(측량법)가 담당하는 순수 **지명 분쟁**의 경우도, 자치단체간 **관할**을 **초과**할 경우 조정할 **제도**가 없어 **보완** 필요

※ 전남 일림산 명칭 분쟁은 전남도 지명위원회 조정 불가 사례

o **위원회**를 **구성**시 **다수의 공무원**이 **참여**하거나, **민간인**을 **위촉**하도록 하고 있어 **공정성**에 **문제**소지

※ 행정협의조정위(상비위원 9인 중 5인이 공무원), 지명위(국토지리정보원장 위촉) 등 구성상 공무원의 영향력이 큼

※ 일본의 국-지방계쟁위원회의 위원은 전원 민간인

< 문제점 분석 결론 >

○ **공공시설의 명칭 분쟁**은 **자치단체간 협의**에만 의존할 경우, **장기화**되는 경향이 있어, 외국에서도 **적극적**으로 **국가가 조정**

○ **현 제도**상 **국책사무**에 관한 **국가-지방간 분쟁**시 **합리적 조정 기제**가 없어 **제도 보완**이 필요

◇ 조정시스템간 비교 ◇

조정시스템	역 할	한 계
행정협의 조정위원회	중앙-지방간 분쟁 조정	국가사무는 조정 제외
정책조정기구 (총리실)	정책에 관한 분쟁 조정	명칭 분쟁의 경우 조정 한계
중앙지명위원회	지명에 관한 분쟁 조정	공공시설의 경우 조정 불가
지방자치단체 분쟁조정위원회	자치단체간 분쟁 조정	국가 관여 분쟁시 조정 한계
갈등조정회의	공공 정책에 대한 갈등 조정	강제 수단 미흡

4. 개선 방안

□ 사전적인 민주적 절차 확보

≪제1안≫ : 국회 계류 중인 **'공공기관갈등관리에관한법률' 조속 입법**

o 공공정책에 대한 **갈등영향분석** 및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운영**으로 **갈등 사전 예방**

- 국민생활에 중대하고 광범위한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정책의 경우 **갈등영향분석서**를 작성하고,

· **갈등관리심의위원회**(11인 이내)를 통해 **분쟁해결수단 심의**

* 필요시 이해당사자 참여에 의한 의사결정을 통해 갈등 예방

≪제2안≫ : **국책사업 계획 단계부터 명칭 사전 합의 제도화**

o 국책사업 실시 이전 각종 **인허가관련 법안**에 이해관계자간 **공공시설명칭 사전 합의**를 명시

ex) 도로 구역 결정시 득하여야 하는 하천법상 하천공사시행, 농지법에 의한 농지전용, 공유수면관리법상 매립점용 허가 등 인허가 사전에 명칭합의를 규정

< 최적안 : 제1안>

o 이해당사자간 **합의**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명칭분쟁의 특성**을 고려할 때, <제2안>에 의해서는 **법적**으로 **국책사업**의 **추진**이 **불가능** 할 수 있으므로,

☞ **<제1안>**이 **최적안**임

□ 사후적인 분쟁 조정기제 마련

o 국책사업에 의한 공공시설의 명칭분쟁

≪제1안≫ : 행정협의조정위원회(지방자치법 제156조의2)**의 보완**

- 행정협의조정위원회로 하여금 기존 처리하던 사무 이외에 「**중앙·지방 분쟁 사무**」(아래)까지 **처리토록 관련 제도 정비**

아래: < 중앙·지방분쟁사무 >

o **중앙정부와 특정지역 또는 2개 이상의 지역간 이해관계가 첨예하여 중앙정부가 1년 이상 시행치 못하는 국가사무**

- 상기 사무에 대한 **조정안을 결정, 권고** 내지 **강제.** 단, 불만이 있는 이해관계자는 사법기관에 소원 제출 가능

- 단, 타 법령에 의하여 운영되는 분쟁 및 갈등 조정 체계가 있는 경우, 그에 의한 조정을 우선으로 함

* 제소권자 : 중앙정부 및 이해관계가 있는 자치단체

- 국가-지방간 분쟁이므로 '**중앙·지방간 분쟁조정위원회**'로 **개칭**하고 **공정성 확보**를 위해 위원회 구성시 **민간 위원의 수**를 확대

- 지방분권이 강화되면 **지방사무 중**에서도 중앙-지방간 갈등이 우려되는 바 향후 **추이**에 따라 아래의 영역을 **상기사무**에 추가

< 아 래 >

o **지방정부**의 **부작위**나 **사무의 집행** 및 **관리**가 **국가의 안정성** 및 **통일성을 심각**하게 **훼손**하여 **중앙-지방간 분쟁**을 유발하는 **지방사무**

- 상기 사무 추가시 **업무 증대**에 따라 지방정부의 사무를 담당하는 **행정자치부**내 **사무국** 설치(현 행정협의조정위의 사무국은 없음)

- 단, 타 법령에 관련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제2안≫ : 갈등조정회의(공공기관의갈등관리에관한법률제20조)**의 보완**

- 갈등조정회의에서 **분쟁당사자**간 **합의된 사항**을 미이행시 **강제이행권**을 **부여**

< 최적안 : 제1안>

o **갈등조정회의**에 **사법부**에 버금가는 **강제이행권**을 부여시, **허심탄회한 토론**이 힘들어 **대화**와 **타협, 신뢰회복**을 추구하는 '**공공기관의갈등관리에관한법**'(이하 법)의 **취지**에 **어긋나고,**

- 법 22조에 의해 분쟁 당사자간 **문서**로 **합의한 사항**은, 법상 강제이행권이 없더라도, 공법상 **계약**으로 간주되어 **강제이행권**에 버금가는 **효력**이 있으므로 **강제이행권 부여**는 **장기 검토**

☞ **<제1안>**이 **최적안**임

o 지명위원회(측량법)가 담당하는 순수 지명 분쟁에 관하여

- 각 **지명위원회 관할**을 **초월**한 **분쟁**에 관한 **조정권**을 **중앙지명위원회**에 부여하고, **공정성 확보**를 위해 위원회에 **민간 위원의 참여**를 확대

5. 향후 계획

□ **위호의 개선방안**(최적안)에 대한 **대통령님 지시**에 의거

o 국무조정실, 행정자치부, 건설교통부 등 관계기관에 통보(2006. 9)

o 행정자치부, 건설교통부 등 관계기관이 법 개정 등 후속조치 추진(2006. 하반기)

6. 관계부처 의견 (별첨 4)

□ 국무조정실

o '공공기관의갈등관리에관한법'에 따른 **용어수정**과 **갈등조정회의**의 **강제조정권 부여**를 **대안**에서 **삭제**할 것을 요청(국조실, '06.6.8)

☞ **강제조정권의 부여**가 '공공기관의갈등관리에관한법' **취지**에 어긋난다고 하여 **갈등해결 차원**의 검토 **대안**에서 **제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 일부 대안의 생략시 **최적안 도출의 근거**가 **불분명**해지므로, **미반영** (단 용어 수정은 반영)

□ 건설교통부

o 타 법령에 의하여 **각 기관**에서 운영하는 **갈등 조정 시스템**에 의한 **조정**이 **우선함**을 명시토록 요청(건교부, '06.6.14) ☞ **반영**

별첨 1. 국내 명칭 분쟁 사례
별첨 2. 분쟁관련 조정기구 현황
별첨 3. 외국사례 분석
별첨 4. 관계기관 의견 및 반영

별첨 1. 국내 명칭 분쟁 사례(의견청취)

① 신항의 사례(관계기관 의견 청취)

□ 관련 경위

○ "부산신항 건설사업" 고시('97. 7) 이후, 경남도가 명칭변경 요구

○ 해수부 장관 중재로 지자체장, 지역여야의원 등 참석 회의 개최(2005.3.7) → 미합의

○ 해수부는 '명칭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대안을 선정한후,. '행정협의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2005.5)

- '행정협의조정위원회'는 국가사무라는 이유로 각하(2005.9)

○ 항만법상 '중앙항만정책심의회' 에서 공식명칭을 '신항'으로 확정(2005.12.19)

□ 분쟁 원인

《부산시의 입장》

○ **정치적 논리** 등에 밀려 **중앙부처의 국가 고유 권한** 행사 미흡

○ 중앙부처가 신항만 개발사업은 '프로젝트'로서 항만 운영상의 용어와 별개라는 입장을 보여,

- 명칭분쟁이 미해결된 상태에서 사업을 추진

* 경상남도는 부산 신항만사업에는 동의하나, '부산신항'이라는 항만운영상의 용어에는 부동의

○ 신항의 브랜드 가치제고를 위하여 '부산신항'이 타당

《 경상남도 및 진해》

○ 1997.2월 이후 80여회에 걸친 명칭변경요청에도 불구 중앙정부가 **국가사무 처리**를 **지연**

- 해수부는 "**부산신항** 명칭은 신항만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업명칭**이며 **항만 명칭**은 **공사 준공 이후 지자체와 협의 후 결정**" 입장고수

→ 양 지자체간 **갈등의 장기화 초래**

○ 명칭분쟁 등 **국가사무에 대한 지자체간 갈등**을 조정해 줄 수 있는 **'조정기구'** 부재

○ 경남내의 공사에 의한 피해는 부산이외의 지역에도 영향을 미치지만 이익을 부산이 독식하는 것은 **속지주의 원칙**에 어긋남

※ **'진해신항쟁취범도민비상대책위원회'**의 주장 ○ 진해 등 인근 공사용 시·군의 토사석 및 바다모래 제공, 바다해충·양식어장 등 생계터전 피해, 소음·분진 등 환경오염 피해 ○ 피해에도 불구 사업추진에의 협조는 지역의 발전을 위한 것임 ○ 항만, 공항 등은 국내외로 속지주의 원칙을 적용 - 국내사례: 평택·당진항, 인천국제공항(서울), 김해국제공항(부산) - 국외사례: 뉴욕·뉴저지항, 코펜하겐·말뫼항 나리따공항(동경)

○ 해수부의 '항만정책심의회의'에서의 최종 결정은 실제로 관계 장관회의 등 소수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명분과 정당성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여짐

② **천안아산역의 사례**(관계기관 의견 청취)

□ **관련 경위**

○ 경부고속철 천안권 경유지 확정(1990.6)

○ 충남(장재역), 아산시(아산역), 천안시(신천안역)간 명칭 분쟁(2000～)

○ '고속철도 명칭선정 자문위원회'는 천안아산역 건의(2003.2)

○ 행정협의조정위원회는 아산시의 조정요구 각하(2003.8)

○ 건교부는 천안아산역(온양온천)으로 최종 결정(2003.8)

□ **분쟁 원인**

《 **충청남도** 》

○ **중앙정부 판단력, 의지 부족이 갈등의 직접적인 원인**

- 대형 국책 사업에 대한 판단을 지자체에 의존하는 오류를 범함

○ 중앙정부 차원의 협의회는 다소 현장 감각이 결여됨

《 **아산시** 》

○ 현 천안아산역 명칭은 아산시민의 행복추구권, 평등권을 침해하고 헌법 제117조에 따른 **자치권**과 **주민권**에 위반

※ 10년 내에 아산시의 시세가 천안시를 능가할 것이며, 그 때에는 행복추구의 차원에서 아산역의 탈환을 주장

○ 행정구역상 아산시에 있는 역사의 명칭에 '천안'이 포함되는 것은 **속지주의 원칙**에 위배

○ **공정성없이 구성**된 '고속철도역 명칭선정 자문위원회'가 명칭을 결정

- 순수민간기구로 위원회를 구성해야 했음

○ 지역 대표 국회의원의 부족 등 천안에 비한 **정치적 약세**도 문제

《 천안시 》

○ 천안은 충남 제1의 도시로서 교통요충지이며, 역사부근(반경 4㎞)에 천안 시민의 51%가 거주함을 고려시 역사 명칭은 타당한 결정

○ 아산시의 주장은 국가와 사회의 공동이익을 망각한 집단이기주의의 전형

○ 위원회를 통하여 협의적으로 건교부가 합리적인 결정을 하였으나,

- **중앙정부가 직권조정 했어야 할 국가사무를 방기한 측면이 있고,**

- 광역자치단체인 충청남도의 적극적인 중재조정 역할이 미흡했음

○현행 갈등조정제도 자체의 문제보다는 운영미숙이 문제점

③ 전남도청 이전 신도시 명칭 사례

□ 전남도가 국제적인 느낌이 들도록 개명의 필요성 제기하였으나,

○ 무안주민들은 '남악신도시'의 지속적 사용을 주장

④ 하동-남해간 제2현수교 명칭 사례

□ 하동군은 기존의 '남해대교'라는 명칭으로 인해 남해지역만 혜택을 보았으므로 제2현수교의 명칭은 '노량대교' 주장

○ 남해군은 대부분의 언론에 '제2남해대교'로 표기되는 현 추이를 관망

별첨 2. 분쟁관련 조정기구 현황

① **행정협의조정위원회**(지방자치법 제156조의 2)

□ **중앙부처장**과 **지자체장**간 **사무**처리에 있어 **이견**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협의·조정을 위해 설치된 **국무총리**소속하 협의기구

○ 순수한 **국가 사무**나 **자치 사무**에 대한 분쟁에 대해서는 **관할권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국책사업 조정기제**로는 **미흡**

※ 신항과 천안아산역 명칭분쟁도 조정신청이 제기되었으나 국가사무로 인식되어 각하됨

○ 위원장 포함 13인 위원 중 재경부 장관 등 중앙부처 장관급 당연직 5명, 민간직 4인으로서 **공정성**에 **문제소지** 있음

* 13인 중 잔여 4인은 관련 주무 장관과 자치단체장 중 구성

※ 신항과 천안아산역 분쟁 당사자도 해당 명칭결정시 구성된 위원회의 공정성에 불만 표현(별첨1)

※ **일본**의 국-지방계쟁위원회의 위원은 **전원 민간인**

② **지방자치단체 분쟁조정위원회**(지방자치법 제140조의2)

□ 지자체 또는 지자체장간 사무에 있어서 발생한 분쟁의 조정

○ '중앙분쟁조정위원회'(행자부 소속)는 시도간 시도를 달리하는 자치단체 및 조합간 분쟁을 처리

○ '지방분쟁조정위원회'(시도지사 소속)는 그 외의 분쟁을 처리

□ 국가사무에 대해서는 **분쟁 조정 권한**이 없으며, 중앙분쟁위 경우 당연직 공무원의 구성 수가 많아(11인 중 5인) **공정성 문제 소지**

④ **정책조정기구**(총리 및 국무조정실)

□ **정책**이 아닌 **명칭분쟁** 등 지방간 이익의 첨예한 **갈등 사안**의 경우 '국정현안 정책조정회의'(총리주재) 등이 다루기 **부적합**

⑤ **지명위원회**(측량법 제58조)

□ 지방자치법이나 기타 법령에서 규정한 이 외의 경우, **지명**의 **제정·변경** 등 지명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

○ 중앙지명위원회(건교부), 시도지명위원회(광역), 시군구지명위원회(시군구)로 구분되며, 각 **하위 지명위**의 보고 사항을 **심의 · 의결**하나

- 각 하위 지명위의 **관할을 초월한 분쟁**의 경우, **조정권이 없음**

※ 전남 일림산 명칭 : 전남도 지명위원회에서 조정이 안된 사례

- **공공시설 명칭 결정권**이 없으며, 중앙지명위는 구성상 민간의 참여가 제한(국토지리정보원장이 위촉)되어 **공정성 문제 소지**

⑥ **갈등조정회의**(공공기관의갈등관리에관한법 제20조, 국회 계류중)

□ 공공정책 수행시 **공공기관의 장**이 **이해관계자와의 합의**에 따라 기본 규칙을 정하여 구성

○ **합의사항은 문서로 작성, 당사자간 서명, 당사자를 구속**

□ 당사자간 합의에 이르지 못하거나 합의사항 미이행시 **강제할 조정 수단이 없음**

별첨 3. 외국사례 분석

① 미국

□ 미국 지명위원회(US Board Geographical Names : USBGN) 운영

○ 지도상 지명 분쟁 해결위해 내무부, 국무부, CIA 등도 참여하는 정부 합동기관 (위원장은 내무장관이 임명)

※ Main 주 의회 통과 지명 중 "Squaw, 인디언 여자 또는 매춘부 지칭"를 "Moose"로 변경('04.9) 등

□ **주정부**도 **공공시설**의 **명칭부여**를 위한 위원회를 운영하고,

○ **연방정부**의 예산이 투입된 항만·철도 등 **공공시설명칭**은 주로 연방정부가 **명칭부여 권한**을 소유

② 덴마크는 문화부 산하 지명위원회 운영

□ 해당지역 '명칭선정위원회'가 조율치 못한 사항을 조정

※ 최근 대규모행정구역 개편(271개 시군→98개 시군, 13개 도→5개도)시 지자체의 반발이 있자 내무부장관이 조정토록 권고

③ 스페인은 헌법(제149조)에 의해 주요 공공기관·시설물에 대한 명칭결정 등을 중앙정부 독점권한으로 인정

※ 카탈루냐 주정부가 중앙정부의 도로명칭부여 권한에 대해 위헌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합헌 판결(88.7)

④ 헝가리는 자치정부간 명칭 분쟁시 중앙정부가 개입·해결 유도

⑤ 일본은 자치정부간 명칭 분쟁시 자체해결을 유도하여, 정부조정기구는 없으나, 최근 관련 갈등으로 문제화

※ 아이치현 미하마쵸와 미나미치다쵸의 합병으로 건설될 신도시의 명칭 관련 분쟁으로 합병자체가 무산('05.3.3)

별첨 4. 관계기관 의견 및 반영

※ 기관의견에 대한 혁신위원회의 **반영여부를 (☞)**로 표시

① 국무조정실

□ **현행 분쟁조정기구의 문제점 중 '갈등조정회의' 부분 삭제**

o 갈등조정회의 운영의 법적 근거가 되는 **'공공기관의 갈등관리에 관한 법률'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으로서

- 아직 현실에 적용되지 않고 있는 제도로 현행 분쟁조정 기구라 볼 수 없음

(☞ 보고서상 반영)

o 또한 **갈등조정회의에 조정 강제 권한이 없음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으나 이는 **'공공기관의 갈등관리에 관한 법률'의 기본 취지에 어긋나는 것으로 문제점으로 지적하기에 부적절**

- 동 보고서 후반부에서도 이러한 지적이 부적절하다고 언급하고 있는바, **보고서의 일관성 측면에서도 삭제**하는 것이 타당

(☞ 미반영, 이 부분을 삭제하면 '갈등관리에 관한 법률'이 최적안이 될 수 있다는 오해를 줌, 법규의 기본 정신상 강제조정권이 없는 것이 타당할 수 있으나, 이것이 곧 제도의 문제점도 될 수 있음**)**

□ **'갈등관리위원회'**를 **'갈등관리심의위원회'**로, **'11인'**을 **'11인 이내'**로 변경하고 **'민간위원 2/3'**을 **삭제**

o '공공기관의 갈등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정확한 명칭인 '갈등관리심의위원회'로 인용**

o ‘공공기관의 갈등관리에 관한 법률’상 갈등관리심의위원회는 **11인 이내로 규정**되어 있으며 **민간위원의 비율은 대통령령에서 규정**될 예정임

(☞ 보고서상 반영)

□ 사후적 분쟁 조정기제의 대안중 하나로 검토되는 **‘갈등조정회의의 보완’ 삭제**

o 갈등조정회의에 강제이행권 부여는 법안의 취지에 어긋나 검토 필요성이 없는 대안이므로 대안에서 삭제

(☞ 미반영, 대안에서 삭제시 검토 과정의 일부가 생략되어 최적안 도출의 **근거**가 **불분명**해짐)

② 건설교통부

□ 사전적 절차와 사후적 분쟁조정 절차 모두 **갈등관리 절차로 일원화**하여 절차를 간소화할 필요

사전 갈등영향분석 → 갈등관리위원회 심의 → 사업 계획 반영 → 사업추진중 갈등발생 → 갈등조정 회의(이해당사자 참여) → 갈등관리위원회 최종 결정(갈등조정회의에서 미해결시)

* **시설명칭과 지명이 관련**되어 있을 경우 측량법에 의한 “**지명조정위원회”의 조정을 선행**하는 방안을 검토

□ **시설 설치 소관 기관의 책임**하에 시설명칭에 대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적절하고, 제3의 기구 및 조직을 활용할 경우 오히려 문제의 원만한 해결 곤란 우려

* 건설교통 갈등은 건설교통부 **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통해서 해결하는 것으로 제도화**하였음

** 위원회의 중립성을 위하여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전원(9명)을 민간위원으로 임명**

◉ 갈등관리특별태스크포스 및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설치·운영규정 제정(건설교통부훈령 제573호, 2005.8.5 제정, 2005.10.24 개정)

- 갈등관리심의위원회(위원장: 민간위원장) 및 전문분야별 갈등관리전문위원회로 구성

* 교통·물류전문위원회, 국토환경전문위원회, SOC· 건설 전문위원회

(☞ 보고서상 반영 : 여타 법령에 의해 각 부처 등에서 구축한 갈등관리 또는 조정시스템이 있는 경우, 그에 의한 조정이 우선한다는 조항을 삽입**)**

③ 지속가능발전위원회

□ 갈등관리심의위원회에 대한 보충 설명 추가

(☞ 보고서상 반영 : '필요시 이해당사자 참여에 의한 의사결정을 통해 갈등 예방'이란 문구 삽입)

□ 중앙-지방 분쟁조정위원회' 명칭을 다른 이름으로 수정 필요

o 지방자치법 제14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간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약칭"중앙분쟁조정위원회")와 명칭이 혼동이 될 수 있으므로 다른 명칭으로 수정할 필요

(예) "중앙·지방간분쟁조정위원회" 또는 "행정분쟁조정협의회

(☞ 보고서상 반영 : 중앙·지방간분쟁조정위원회로 수정**)**